

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(변경)

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6조에 따라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를 지정(변경)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10월 14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주택지구의 명칭, 위치 및 면적(변경없음)

- 가. 명 칭 :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
- 나. 위 치 :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, 이패동 일원
- 다. 면 적 : 2,447,495㎡

2. 주택지구의 지정일 : 2019. 10. 15.(변경없음)

3. 사업의 종류 :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(변경없음)

4.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,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(변경)

<당초>

명칭	소재지	대표자 성명
경기도	경기도 수원시 팔당구 효원로 1가(매산로3가1-1)	이 재 명
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변 창 흡

<변경>

명칭	소재지	대표자 성명
경기도	경기도 수원시 팔당구 효원로 1가(매산로3가1-1)	이 재 명
한국토지주택공사	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	변 창 흡
남양주도시공사	경기도 남양주시 진관로 15(다산동)	신 동 민

5.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, 지번, 지목, 면적,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(법인의 경우에는 명칭), 주소 : (변경없음)

6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8조,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·군기본계획의 수립·변경 : (변경없음)

7.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:

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<http://luris.molit.go.kr>)에서 열람할 수 있음(변경없음)

8.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: 경기도 남양주시 신도시과(031-590-8885),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기획처(031-738-4442), 남양주도시공사(031-560-1123)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